

이 보도자료는 2020. 1. 3.(금) 13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서울서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최성완

전화 02-3270-4394/ 팩스 02-3270-4310

보도자료  
2020. 1. 3.(금)

## 제 목 라돈 방출 침대 사건 혐의없음 등 불기소처분

### 공소제기 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종국처분 전에 사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어 대중에 널리 알려진 경우의 불기소 사건(제10조 제1항 제2호)
  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0조 제2항)
  - 혐의사실 요지, 불기소이유 요지,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중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의결한 내용(제10조 제3항)
- ※ 2019. 12. 27.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배포되는 자료임

### 1 수사경과

-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(부장검사 이동수)는, 라돈 방출 침대 관련 고소·고발 사건에 대하여 해당 업체 등 관련자 수사 및 환경의학 전문의들 조사, 의료계와 학계,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개최, 대검 인권수사자문관의 검토 등 다양한 수사를 진행하였음

### 2 피의자

- A(○○침대 대표)
- B(□□산업 대표), C(□□산업 부장)
  - ※ □□산업에서 모나자이트(라돈 방출물질로, 음이온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진 천연광물) 분말을 도포한 음이온 매트리스를 제작하여 납품
- D(前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), 원자력안전위원회

### 3 피의사실 요지

- (A, B, C) 2005.~2018.경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침대들을 제작, 판매하여 이를 사용한 고소인들에게 폐암, 갑상선암, 피부질환 등 질병을 야기[**상해, 업무상과실치상**]
- (A, B, C) 2005.~2018.경 침대에서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모나자이트 분말 도포한 침대들을 판매 [**사기**]
- (A, B) 2005.~2018.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방출됨에도, ‘음이온의 방출 인증으로 공기 정화효과까지’라고 거짓 표시광고 [**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, 환경기술및환경산업지원법위반**]

- (D, 원자력안전위원회) 2012. 7.~2018. 5. 모나자이트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라돈 방출 침대 사태를 초래하고, 2018. 5. ○○침대 방사선량 분석 결과를 낮추어 발표 [직무유기]

## 4 수사결과

### ● 상해,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관련

-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사실은 인정되나, 폐암 이외 다른 질병 (갑상선암, 피부질환 등)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태임
- 한편, 폐암은 라돈 흡입만으로 생기는 '특이성 질환'이 아니라 유전·체질 등 선천적 요인과 식생활습관, 직업적·환경적 요인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'비특이성 질환'임
  - ※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폐질환은 살균제의 특정 성분 흡입에 따른 독성반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'특이성 질환'
- 유전적 요인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일상생활 중 흡연, 대기오염 등 다양한 폐암 발생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점에 비추어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움
  - ※ 담배소송사건(대법원 2011다22092)에서도 폐암은 비특이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

### ● 사기, 거짓 광고 혐의 관련

- 제품의 안전성 결함에 따른 사기죄는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나, 피의자들 본인과 가족도 라돈 침대를 장기간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 유해성 인식(사기 고의)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
- 거짓 광고 부분은 음이온이 방출되는 것은 사실로서 광고가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

### ● 직무유기 혐의 관련

- 매년 업체들 관리실태 조사와 안전교육 실시, 라돈 침대 1차 조사결과 발표 후 시료 추가 확보와 피폭선량 산정 기준 추가 검토에 따라 발표 수치가 변경되었던 점 등 직무의 의도적 방임, 포기로 보기 어려움

### ● 이와 같이 각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**금일(1. 3.) 불기소 처분함**

- ※ 표시·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혐의인정하기 어려우나, 친고죄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어 공소권없음 처분함